

구제역 예방을 위해 반드시 준수합니다.



농가에서는 구제역 예방접종을 반드시 실시합니다.

-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위반 농가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을 위반한 발생농장은 **보상금 전액**을 감액합니다.

* 신고 지연, 소독 미실시 등 방역 준수사항 불이행 시에도 보상금이 감액됩니다.



가축을 거래할 때는 구제역 예방접종을 하였는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 (돼지·염소) 구제역 예방접종확인서, (소·종돈)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
- * 예방접종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송아지, 자돈, 어린 염소를 거래하려는 소유자 등은 어미 소, 모돈, 어미 염소의 '이전 예방접종일'을 기록한 구제역 예방접종확인서를 구매자등에게 인계 또는 휴대하도록 합니다.

농장 내부와 외부를 매일 소독하고, 외부인·출입차량 통제·소독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합니다.

- 일반인은 국내 축산농가의 방문을 자제하고, 축산관계자는 구제역 등이 발생한 국가의 가축 사육시설 방문을 자제합니다.
- * 축산관계자가 가축전염병 발생국 여행 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 철저
- * 축산관계자의 출입국 신고 및 가축전염병 해외 발생 현황 등의 내용은 농림축산검역본부 누리집 <https://www.qia.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축산농가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방역수칙, 예방접종 요령 등을 준수하도록 교육을 철저히 합니다.

의심 가축 발생 시 신속하게 신고합니다.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의심 가축 신고전화(국번없이)

농림축산검역본부
1588-9060

지방자치단체
1588-4060